

대학원 학칙(통합) 개정안 신규대조표

현 행	개 정
제38조의 2 (논문대체) (신설)	<u>제38조의 2 (논문대체) 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그 논문의 제출을 대체할 수 있으며, 대체요건을 충족한 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의 합격과 동일하게 처리한다.</u>
	부칙 1.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안 신규대조표

현 행	개 정
제37조(학위청구논문절차) ②논문대체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2학기 말에 논문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신청서를 제출한 학기부터 최종학기까지 이수한, 수료 학점 초과 9학점을 인정한다.(신설 2018.8.1. ,개정 2020.1.1.)	<u>제37조(학위청구논문절차) ②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를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 등록 두 번째 학기부터 논문대체신청서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③ 논문대체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석사학위논문 제출자에게 요구되는 졸업 이수 학점 외에 재학 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9학점 이상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</u>
제11장 연구윤리 준수 (신설)	<u>제 11장 연구윤리 준수</u> <u>제71조(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)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‘연구윤리서약서’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제72조(연구부정행위 조사)</u> <u>①연구진실성에 저해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구술·서면·전화·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대학원장에게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②대학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학위청구논문연구윤리조사위원회의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.</u> <u>③학위청구논문연구윤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, 대학원위원회의 위원 중 3인과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한다.</u> <u>④위원장은 대학원위원 중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</u>

	<u>⑤학위청구논문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⑥대학원장은 제 72조 5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</u> <u>⑦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학위청구논문 작성자 및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 사항을 결정한다.</u> <u>⑧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제73조(학위청구논문 연구부정행위자 등의 징계처분)</u> <u>①연구부정행위가 판정된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자가 재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징계하고, 수료자인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.</u> <u>②연구부정행위가 판정된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자의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지도교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논문지도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논문지도 자격은 예외로 인정한다.</u> <u>③연구부정행위가 판정된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자가 이미 학위를 받은 자의 경우, 대학원 학칙에 따라 총장은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</u>
제11장 보칙 제71조(준용사항) 제72조(내규 등)	<u>제12장</u> 보칙 <u>제74조</u> (준용사항) <u>제75조</u> (내규 등)
	부칙 1.(시행일) 본 개정 학칙 시행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